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17 선고 2018가합579691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명

담당변호사 성기창, 성승용

피고1. A

2.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음

담당변호사 김정희, 박인동, 소병선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명원, 서범석

변론 종결2019. 6. 19.

판결 선고2019. 7. 17.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75,176,892원과 그 중 271,859,118원에 대하여는 2018. 9. 3.부터 2018. 11. 23.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A과 피고 B 사이에 2018. 1. 8.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B은 A에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와 2018. 1. 9. 접수 제244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5.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주문 제1항 중 2019. 6. 1. 이후로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이외에는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4. 6. 11. 주식회사 C(이후 상호가 '어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으로 변경되었고,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보증금액 297,500,000원, 보증기간 2014. 6. 11.부터 2015. 6. 10.까지(이후 보증기간은 최종적으로 2018. 6. 8.까지로 변경되었고, 보증금액은 2016. 5. 31.경 267,750,000원으로 변경되었다)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 A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 등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소외 회사는 2014. 6. 11.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으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3) 원고는 E으로부터 소외 회사의 2018. 5. 15.자 신용보증사고 발생사실을 통지받고, 2018. 9. 3.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E에 271,859,118원(= 보증원금 267,750,000원 + 이자 4,109,118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이와 관련한 위약금 1,324,810원, 채권보전비용 1,992,964원이

발생하였다.

나. 피고 A의 근저당권설정 등

피고 A은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8. 1. 8. 피고 B과 사이에 근저당권자 피고 B, 채무자 소외 회사, 채권최고액 276,267,550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8. 1. 9. 피고 B에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와 2018. 1. 9. 접수 제2447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피고 A: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피고 B: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위약금, 채권보전비용 합계 275,176,892원(= 대위변제금 271,859,118원 + 위약금 1,324,810원, 채권보전비용 1,992,964원)과 그 중 대위변제금 271,859,11원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인 2018. 9. 3.부터 피고 A에게 이 사건 소장 부분이 송달된 2018. 11. 23.까지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10%,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지만,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0.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인 2018. 1. 8.에는 원고의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이전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로부터 불과 4개월여 후인 2018. 5. 15.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기하여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여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A의 무자력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거나 심화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거나 그 상태가 심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A이 채무초과상태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아래와 같이 소극재산이 합계 1,201,271,665원으로 적극재산 합계 731,978,000원을 초과하고 있었으므로 A은 무자력 상태였다.

(1) A의 적극재산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이 법원의 안산시 상록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이 법원의 수원시 권선구청장에 대한 과세정보회신결과를 종합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A의 적극재산은 아래와 같이 합계 731,978,000원(= 381,978,000원 + 350,000,000원)이었다.

① 이 사건 부동산 : 381,978,000원

② 수원시 권선구 F아파트, G호 : 350,000,000원

(2) A의 소극재산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0, 11호증, 을나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H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A의 소극재산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201,271,665원이었다.

원고	267,750,000
피고 B	212,513,500

원고	267,750,000
I조합	165,000,000
J단체	556,008,165
합계	1,201,271,665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부동산을 채권자들 중 1인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의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던 A이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은 피고에게만 우선변제를 받도록 함으로써 다른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이고, A이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도 여전히 채무초과상태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의 피고에 대한 위 담보제공행위는 일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A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라. 피고의 선의 항변

(1) 피고는 A이 대표로 있는 소외 회사에 2016. 5.경부터 생선을 납품하였는데 2016. 11.경부터 2017. 10.경까지 소외회사로부터 합계 212,513,50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대표자인 A이 위 물품대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일 뿐,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한다.

(2) 그러나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도 소외 회사가 2017. 10.경

이미 피고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이 212,513,500원에 달할 정도로 자금난에 처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더욱이 대표자의 개인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을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② 이 사건 부동산에는 이미 채권최고액인 214,500,000원인 선순위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피고가 채권최고액 276,267,550원인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가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인 381,978,000원을 초과하게 되는바, A이 이와 같이 채권액에 미치지 못하는 담보밖에 제공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다는 사정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주장이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변론종결 후 제출된 자료 포함)만으로는 악의의 추정을 반복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원상회복의 방법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A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병철

판사인진섭

판사김미호

별지